

KIMM-Family 기업 협약서

한국기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은 (주)에이스나노켐을 KIMM-Family기업(이하 “Family기업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, 발전하도록 기술지원을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서는 연구원이 Family기업에 기술이전, 인력, 학술정보, 시설·기자재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Family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운영원칙)

-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과 Family기업 쌍방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 (지원사항)

- ① 研究院은 Family기업에 대하여 研究院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그 지원기간은 총 육성기간으로 한다.

1. 시설지원
 - 가. 研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시설의 사용 편의 제공
 - 나. 研究院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·시험용 장비의 사용 편의 제공
 - 다. Family기업의 소속직원들의 研究院 출입 및 시설사용 편의 제공
 - 라. Family기업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항

2. 기술지원
 - 가. 研究院 보유기술의 우선적 이전
 - 나. Family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지도
 - 다. 시험분석 및 결과 제공
 - 라. 제품의 신뢰성 평가
 - 마. 研究院의 기술정보 제공
3. 인력지원
 - 가. 테크노닥터 지정운영

- 나. 기업에서 요청한 기술 인력의 자문 또는 지원
 다. 기술인재지원 인력의 멘토지정 운영
-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발생되는 제반 직접비용은 Family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때 비용의 산정은 研究院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일부 또는 전체를 할인 할 수 있으며,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한다.
-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정분야 또는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 (Family 기업의 준수 및 협력) Family 기업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또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① 본 협력업무 수행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지득한 연구원의 제반 연구자료 및 업무사항 등을 연구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.
- ② 기업테크노닥터의 출입 및 안전을 보장 하여야 한다.
- ③ 연구원 소유의 각종 실험장비 및 공구의 자유로운 반출 · 입을 허가한다.

제5조 (효력발생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 협약의 연장은 협약의 종료 6개월 전까지 상호 협약을 통해 할 수 있다.

제6조 (기타)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, 기관 당사자가 서명한 후,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5 월 21 일



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공단로 33

대표 이종훈



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

원장 박천

